미국

법원, 특수효과를 사용한 영화제작사는 특수효과 회사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리침해와 기여침해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김혜성 (현송 법률사무소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석사, 이화여대 법학전문석사)

2018년 6월 18일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은 특수효과 회사와 계약 체결 후 특수효과 회사가 얼굴 움직임 포착 프로그램을 무단 사용하여 만든 결과물을 제공받아 영화에 사용한 영화제작사는 특수효과 회사의 저작권 직접 침해에 대하여 대리침해와 기여침해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판단함. 이는 영화제작사의 대리침해, 기여침해가 인정될 여지가 있으므로 그에 대하여 법원의 실체적 판단을 받아 볼 필요가 있음을 인정한 것임. 영화제작사가 특수효과 회사의 직접 침해에 대하여 실제로 대리침해 내지 기여침해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는 추후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될 것임.

사실 관계

○ MOVA 모션 캡쳐 프로그램(MOVA Contour Reality Capture Program, 이하 'MOVA')은 영화에 사용할 이미지를 만들기 위하여 사람의 얼굴 움직임을 포착하는 프로그램임.

- MOVA 컨투어 기술은 배우의 얼굴에 빛이 나는 메이크업을 한 후 특수 카메라와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얼굴의 선, 표현, 움직임을 살아 있는 듯한 애니메이션으로 바꾸는 기술임.
- 애니메이션 '미녀와 야수' 중 야수 캐릭터가 이 기술이 이용된 대표적인 예임
- MOVA 프로그램의 개발자인 Rearden이 MOVA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및 관련 하드웨어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

○ Digital Domain 3.0(이하 'DD3')은 얼굴 움직임 포착 서비스 및 컨투어 프로그램으로 만들어낸 결과물을 영화제작사에 제공하는 특수효과 회사임.

○ 영화제작사 디즈니, 21세기 폭스, 파라마운트 픽쳐스 및 비디오 게임 제작사 크리스털 다이나믹스는 DD3와 계약을 체결하고 얼굴 움직임 포착 서비스 및 컨투어 프로그램으로 만들어낸 결과물을 제공 받아 영화 등에 사용함.

○ Rearden은 MOVA 프로그램을 무단 사용한 DD3은 직접적인 저작권 침해 책임을 부담하고 DD3로부터 얼굴 움직임 포착 서비스 및 컨투어 프로그램으로 만들어낸 결과물을 제공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영화제작사들은 대리침해 또는 기여침해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함.

법원의 판단

○ 2018년 6월 18일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은 특수효과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특수효과 회사가 얼굴 움직임 포착 프로그램을 무단사용 하여 만든 결과물을 제공받은 영화제작사는 특수효과 회사의 저작권 직접 침해에 대하여 대리침해와 기여침해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판단함[<1>].

○ Rearden이 영화제작사가 (1) 저작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한 DD3에 대하여 지배력을 행사하였고 (2) 직접 침해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직접적으로 얻었음을 입증해야 영화제작사의 대리침해(Vicarious Copyright Infringement)가 인정될 수 있음.

○ 영화제작사는 직접 침해를 중단시킬 법적인 권리와 실질적인 능력이 있었으므로 DD3에 대하여 지배력을 행사하였음이 인정됨.

- 직접 침해자인 DD3의 직접적인 저작권 침해 행위를 중단시킬 법적인 권리와 실질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영화제작사가 DD3에 대하여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음.
- DD3는 영화제작사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영화제작사에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영화제작사는 이 계약에 근거하여 DD3의 서비스 제공을 중단시킬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므로 DD3로 하여금 MOVA 프로그램의 사용을 중단하도록 함으로써 저작권 침해 행위를 막을 수 있었음.
- 영화제작사는 DD3가 제공한 서비스를 검사할 권한과 실질적인 능력이 있었으므로, 만약 영화제작사는 DD3가 제공한 서비스가 부적절하거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DD3의 서비스 제공을 중단시켰어야 하나 그러지 않았음.

○ 영화제작사는 직접 침해로부터 경제적인 이익을 직접적으로 얻었음.

- 불법 저작물이 고객을 끄는데 이용될 수 있다면 경제적 이익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음.
- 저작권 침해 행위와 영화제작사가 얻은 경제적 이익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면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 요건이 충족되고, 그 경제적 이익이 영화제작사의 전체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문제되지 않음.

○ MOVA 프로그램을 이용한 얼굴 움직임 포착 덕분에 영화 캐릭터들이 더욱 그럴듯해 져서 결과적으로 더 많은 관중을 끌어들일 수 있었으므로 영화제작사는 저작권 침해로부터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임.

<1> Rearden v. Disney, No. 17-cv-04006-JST (CAND June 18, 2018).

○ 영화제작사가 (1) 제3자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알고 있었고 (2) 저작권 침해 행위를 유발하거나 그에 대하여 물질적인 기여(material contribution)를 한 경우에는 기여침해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

○ 영화제작사는 그 직원과 에이전트를 통해 DD3가 MOVA프로그램으로 만들어낸 컬러 및 흑백 결과물을 검토하였고 그 결과물에는 Rearden의 저작권 경고 문구가 표기되어 있었으므로, 영화제작사 관계자가 직접 침해에 대하여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음.

○ 영화제작사는 DD3로 하여금 MOVA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하는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DD3에게 MOVA 프로그램을 사용하도록 지시하여 저작권 침해 행위를 유발하거나 그에 대하여 물질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음.

평가 및 전망

○ 이는 영화제작사의 대리침해, 기여침해가 인정될 여지가 있으므로 그에 대하여 법원의 실체적 판단을 받아 볼 필요가 있음을 인정한 것이므로, 영화제작사에게 실제로 대리침해 내지 기여침해 책임이 있는지 여부는 추후 판단될 것임.

※ 참고 자료

https://bit.ly/2KyLRG1
https://bit.ly/2MB5CNS
https://bit.ly/2tdyt3E

미국

법원, 보트 외장을 위한'Shatter Graphics' 디자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피고에게 저작권침해와 유인침해를 인정함.

박형옥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지적재산권법 박사수료)

보트 외장에 맞춤형 예술작품을 디자인하거나 제작해주는 원고가 자사의'Shatter Graphics'디자인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디자인을, 무단으로 '폰툰 보트'외장에 포함하여 판매, 광고, 배포하고 제3자로 하여금 원고 디자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도록 유인한 피고에 대해 저작권침해, 계약위반, 유인침해를 이유로 예비적, 영구적 금지명령과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2018년 6월18일 인디아나 북부지방법원이 원고의 "002 디자인"은 저작권법 제101조의 실용품의 디자인에 포함된 회화적 예술작품 으로서 제113조(b)의 "실용품"예외에 따라 보호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으며,"338 디자인"의 개별적 요소들의 조합은 저작권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창작성을 가졌다는 근거를 들어 피고의 저작권 침해와 유인침해를 인정한 사례.

사실관계

○ The Art of Design("TAOD"이하'원고'라함)은 대형버스, 보트, 비행기, 자동차, 헬리콥터를 포함한 다양한 운송수단의 외장 표면에 적용할 수 있는 맞춤형 예술작품을 디자인하거나 에어브러시[1]를 이용하여 제작해주는 회사임. 인터넷과 잡지 그리고 고객과의 직접거래를 통하여 사업을 해오고 있음.

○ 원고는 깨지는 유리 조각의 모양을 나타내는 'Shatter Graphics' 디자인의 단독 저작자이거나 양수인임. 디자인은 "002 디자인" 과 "388 디자인"으로서 각각 미국 저작권청에 저작권 등록 되어있음.

○ Pontoon Boat 사는 Bennington(이하'피고'라함)이라는 이름으로, 폰툰보트(pontoon boat)[2]를 포함한 해양산업 관련된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임.

○ 2011년 피고는 원고에게 접근하여 피고의 제한된 수의 폰툰보트에 디자인을 적용해줄 것을 제안함. 원고는 피고에게 예술품 샘플을 제공하였고, 피고는 폰툰보트 외장에 그려질'Shatter Graphics'을 선택함.

<1> 에어브러시(Airbrush): 공기압을 이용하는 도료 착색용 기구, 네이버 사전 참고 2018.7.01.방문.
<2> 폰툰보트(pontoon boat): 밑이 평평한 작은 배. 네이버 사전 참고 2018.7.01.방문.

○ 원고가 제한된 수의 피고 보트 외장에 'Shatter Graphics'을 그려주는 것에 대해 피고는 대가를 지급하며,'Shatter Graphics'을 서면 허락 없이 누구에게도 복제, 배포하지 않겠다는 계약을 원고와 체결함.

○ 이후 피고는 원고의 승인 없이 'Shatter Graphics' 혹은 그것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디자인을 포함하는 제품을(계약상의 보트들이 아닌) 판매, 광고, 배포함. 또한 원고의 승인 없이 Hawkeye Boat Sales(또 다른 피고)에게 원고의 'Shatter Graphics'의 사본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디자인을 제공함. Hawkeye Boat Sales 역시 원고 승인 없이 'Shatter Graphics'을 포함하는 자체 제품을 판매, 광고, 배포함. 원고는 피고들이 계속해서 침해 혐의가 있는 행위에 관여한다고 주장함.

사건 경과

○ 2015년 3월3일 원고는 피고들에게 침해행위의 중지를 요청하는 경고장을 발송함. 피고는 원고의 요구를 거절하였고 다른 피고 Hawkeye Boat Sales는 원고의 요구에 답하지 않음.

○ 2016년 9월6일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계약위반, 부당이득, 저작권침해, 불공정경쟁, 유인침해[<3>], DMCA 1202조[<4>] 위반을 주장하고 Hawkeye Boat Sales에게는 부당이득, 저작권침해, 불공정경쟁을 주장하며 인디아나 북부지방법원(이하'법원'이라함)에 소를 제기함.

○ 2017년 8월 법원은 피고들의 기각신청을 받아들여 원고의 소를 기각함. 2017년 9월 21일 원고는 피고들의 저작권침해와 피고의 저작권침해, 계약위반, 유인침해를 주장하는 수정된 소장(First Amended Complaint,"FAC")[<5>]을 제출함.

○ 2018년 6월18일 법원은 원고의 저작권침해 주장에 대한 피고들의 기각요청을 거절하고 피고에 대한 계약위반 기각 요청은 인정함. 피고들에 대한 저작권침해와 피고에 대한 저작권침해, 유인침해는 인정함. The Art Of Design, Inc., v. Pontoon Boat, LLC, 2018 WL3022920, Case No.3:16-CV-595 JD.

<3> 유인침해(inducement of copyright infringement) : 미국 저작권 판례에 의하면, 제3자로 하여금 저작권을 침해하도록 안내하거나 용이하게 유인하는 경우의 침해를 뜻한다.

<4> 17 U.S. Code § 1202 - Integrity of copyright management information.

<5> The Art Of Design, Inc., v. Pontoon Boat, LLC, d/b/a Bennington and Bennington Marine, and Hawkeye Boat Sales, Inc., 2017 WL5494806 Case No.: 3:16-cv-00595-JD-JEM. (N.D.Indiana 2017)

The Left Portion		
'388 Design	'002 Design	Alleged Infringe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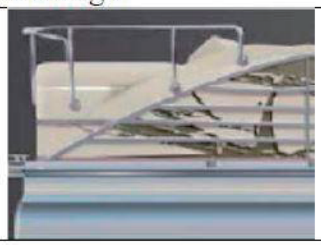	

The Middle Portion		
'388 Design	'002 Design	Alleged Infringe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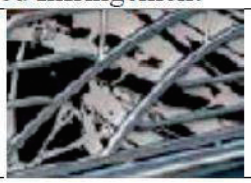

The Right Portion		
'388 Design	'002 Design	Alleged Infringe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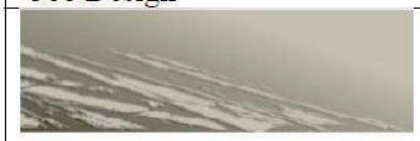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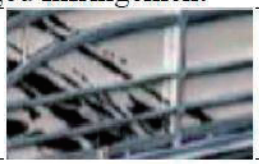

[이미지 참조 : The Art Of Design, Inc., v. Pontoon Boat, LLC, 2017 WL 5494772 (N.D.Ind.), Case No.3:16-CV-595 JD.]

법적 쟁점 및 법원 판단

○ 피고들은 원고의 저작권 침해주장의 기각요청에 대한 근거로'Shatter Graphics' 디자인이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음.

○ 사건의 쟁점 대상인 'Shatter Graphics' 디자인 중 "388 디자인"은 깨어진 유리를 묘사하는 디자인으로 그 자체로는 독창적이지 않고 보호받지 못하는 요소인 기본적인 선과 기하학적인 모양으로 구성되어있음. "002 디자인"은 "388 디자인"이 폰툰보트 측면에 그려진 폰툰보트를 렌더링<6> 한 디자인임.

○ 피고는 "388 디자인"이 저작권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선과 기하학적인 모양으로 예술 창작의 기본 요소이며 독창적이지 않은 표준적 삽화(scenes a faire) 라고 주장함. 또한 그러한

<6> 렌더링(rendering): 아직 제품화되지 않고 계획 단계에 있는 공업 제품을, 누구나 그 외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실물 그대로 그린 완성 예상도, 네이버 사전 참고 2018.7.01.방문.

요소들이 저작권 보호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약한 저작권 보호만 받을 수 있으며, 원고가 독점할 수 없는 아이디어라고 주장함. 그러므로 "388 디자인"과 피고 작품 사이의 저작권 침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떤 충분한 실질적 유사성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 법원은 "338 디자인"의 요소들이 기본적이고 평범하고 표준적인 요소라 하더라도 그것들의 창작적인 조합 혹은 배열은 저작권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독창성을 제공한다고 판단하며, "388 디자인"이 독창적이지 않아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함.

○ 피고는 "002 디자인"이 저작권법 제113조(b)의 "실용품"예외에 해당이 되어 "실용품을 묘사하는 저작물의 저작권 소유자에게 그러한 저작물에 부여된 것보다, 묘사된 실용품의 제조, 배포 또는 전시에 대한 더 크거나 작은 권리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즉, 원고가 실용품의 도면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물품 자체를 다른 사람이 제조하거나 거래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할 권리를 저작권법이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함.

○ 법원은 "002 디자인"은 저작권법 제113조(b) 의 "실용품"예외에 따라 보호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물품의 도면을 이용하여 실용품을 제조하는 것은 침해를 구성한다고 판단함. 그러면서 피고들이 원고의 디자인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디자인을 허락 없이 피고들의 보트에 그리는 것 에 저작권 침해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함.

○ 법원은 "002 디자인"이 실용품의 디자인임에도 불구하고 보트의 실용적인 면으로부터 분리되어 개별적으로 인식이 되고 독립되어 존재할 수 있는 회화, 그래픽, 조각 특징을 포함하는 저작권법 제101조의 실용품의 디자인에 포함된 회화적 작품으로서 간주될 것이라고 판단함. 따라서 "002 디자인"에 대한 피고의 실용품 주장은 기각신청의 이유가 안 된다고 판결함.

○ 법원은 저작권 침해 주장을 위해 원고는 유효한 저작권을 가졌다는 것과, 피고가 독창적인 원작의 구성요소를 복제한 것을 입증해야 한다고 판단함.

○ 법원은 원고가 유효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고 제출된 증거로 확인함. 피고의 직접적인 복제의 증거 확보가 어려울 경우 법원은 피고가 원고 저작물을 복제할 기회를 가졌다는("access") 것을 증명함으로 복제를 입증할 수 있다고 보며, 두 작품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면 피고가 원작을 복제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고 판단함.

○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폰툰보트 외장을 위한 디자인제공을 요청한 점, 제공된 원고 디자인 샘플 중 저작권 등록이 되어있는 'Shatter Graphics'을 선택한 점, 대가를 지불하고 제한된수의 폰툰보트에만 'Shatter Graphics'을 그려주는 것에 대해 원고와 계약한 점으로 미루어 피고의 원고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인정함.

○ 법원은 저작물과 침해물의 실질적 유사성을 분석하기 위해 제7연방 항소법원이 채택한 통상의 관찰자 테스트를 적용한다면 통상의 합리적인 사람은 피고가 불법으로 원고의 'Shatter

Graphics' 디자인의 보호받는 표현을 도용했다고 결론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함.

○ 결론적으로 법원은 피고의 원고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고, Hawkeye Boat Sales에게 원고 저작물을 제공하여 Hawkeye Boat Sales이 원고 디자인을 포함하여 판매, 광고, 배포 하도록 유인한 것에 대해서는 유인 침해를 인정함.

평가 및 전망

○ 피고가 제3자에게 원고의 저작물을 제공하여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도록 유인한 경우에도 유인침해가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준 판결임.

○ 독창적인 그래픽 디자인을 보트와 같은 운송수단의 외장이나 보트가 아닌 다른 운송 매체나 다른 유형의 매체에 적용함으로 저작권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창작적인 2차원 순수예술작품의 저작권 보호영역이 확장되는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음.

※ 참고 자료

https://bit.ly/2z0nvUl
https://bit.ly/2KE3QOC
http://www.taod1.com/
http://www.deanloucksart.com/
https://www.benningtonmarine.com/series/r/

영국

행사를 위해 개인적으로 DJ를 고용하는 것은 DJ가 재생할 음악 저작물 이용 허락을 받을 책임도 수반한다.

최푸름 (University of Debrecen, LL.M)

영국 법원은 저작권법 제16조와 제19조에 의거하여, 행사 진행을 위해 DJ를 고용하는 것에는 해당 DJ가 재생할 음악에 대한 저작권 이용 허락을 받을 의무가 따른다고 판시함. 이에 따르면, 고용인의 관리 감독 의무는 DJ가 재생하는 음악을 장소적 범위에서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것과 DJ가 재생할 음악을 사전에 추려내어 음악 저작물 이용 허락을 사전에 받을 책임을 뜻함.

사실 관계

○ 피고는 레스토랑의 주인으로, 레스토랑에서의 행사를 위해 제 3자를 통해 DJ를 고용함. 이 DJ는 레스토랑 내에서 (on the premises, 점포 내) 행사를 진행하며 음악을 재생함. 이 때 재생된 음악 중에는 'Mama Africa'라는 음악이 있었음. (이하, 이 사건 음악)

○ 원고는 Phonographic Performance Limited (이하 PPL)이라고 하는 영국의 음악 저작권 집중 관리 단체임. 원고는'이 사건 음악'무단 재생이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함. 원고는 '이 사건 음악'은 자신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두 개의 다른 음악과 관련이 있으므로 '이 사건 음악'을 재생하기 위해서는 원고의 저작권 이용 허락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하지만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음악'의 이용 허락을 받지 않았고 무단으로 이를 재생함.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함.

○ 피고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음악을 재생한 장본인은 DJ이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저작권 침해 책임이 없다고 하며 원고의 주장을 반박함. 피고는 '나는 제 3자를 통해 DJ를 고용하였을 뿐, 현실적으로 DJ가 재생할 음악을 세세하게 관리하거나 감독할 수 없었다'며 비록 자신이 음악 저작물 이용 허락을 받을 책임을 다하지 않았지만 DJ를 고용하는 행위 자체가 저작권 침해를 성립시키는 기준이 될 수 없다고 항변함.

쟁점

○ DJ를 고용하는 행위 자체가 DJ가 재생할 음악 저작물의 이용 허락을 받을 의무를 발생시키는지의 여부.

○ 음악 저작물의 영리적 이용 범위.

○ 원고의 관리 감독 의무가 미치는 장소적 범위.

관련 규정과 판례법

○ 영국 저작권법 제16조 제1항(c)에 따르면 저작권자는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 그리고 공중에 실연, 현시 또는 재생할 배타적인 권리를 가짐. 또한 제16조 제2항은 저작권의 침해는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이용하는 행위와 그러한 행위를 하도록 허락하는 자의 행위'에 의해 일어난다고 명시함.

○ 영국 저작권법 제19조 제2항은 실연을 '녹음물, 영화 또는 방송에 의하여 제공되는 것을 포함하여, 시각 혹은 청각적 저작물의 제공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정의함. 제19조 제3항은 저작물을 공중에 재생 또는 현시하는 것은 저작권에 의해서 제한된다고 명시함.

○ Newzbin 판례[<1>]는 영국 저작권법 제16조에 명시된'이용 허락(Authorisation)'에 대해 정의하였는데, 이 때 법원은 저작물에 대한 접근(이용) 여부는 사실 관계에 따라 명시적이거나 암묵적으로 나타난다고 함. 또한 이 판례에 따르면, 저작권을 직접 침해한 자의 침해 사실과 ISP가 침해를 막기 위한 노력 여부가 저작권 침해 책임을 판단할 때 고려되어야 함. Newzbin 판례를 이 사건에 적용한다면, 피고가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는지 가리기 위해서 명시적으로 나타나는 사실 관계와 암묵적으로 드러나는 사실 관계를 모두 파악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ISP의 책임 조항과 같이, 과연 피고가 DJ의 '이 사건 음악'재생을 막기 위한 충분한 관리 감독을 하였는지도 파악하여야 함.

판결

○ 영국 법원은 피고가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결론을 내림. 먼저, 법원은 DJ를 고용하는 행위는 DJ가 재생할 음악 저작물의 이용 허락을 받을 의무를 발생시킨다고 봄. 피고가 DJ를 고용했다는 사실은 해당 DJ가 음악 저작물을 이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함. 영국 저작권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서 원고의 저작물은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이용하는 행위

<1> Twentieth Century Fox Film Corporation v Newzbin Ltd [2010] EWHC 608 (Ch).

(DJ의 '이 사건 음악' 무단 재생 행위)와 그러한 행위를 하도록 허락하는 자의 행위 (DJ에게 '이 사건 음악'을 재생하도록 한 행위)에 의하여 침해됨.

○ 다만, 피고에게는 DJ가 재생할 음악을 미리 추려내어 음악 저작물 이용 허락을 받을 책임이 있었으나 이를 다하지 않음. 따라서 미리 음악 저작물 이용 허락을 받지 않은 피고에게 저작권 침해의 책임이 있음.

○ 피고의 관리 감독 의무가 미치는 범위에 대해서, 법원은 원고가 DJ의 음악 재생을 충분히 감독할 수 있었다고 판단함. 해당 DJ가 음악을 재생한 공간은 피고의 레스토랑이었고 계약상에도 'DJ는 레스토랑 내에서 (on the premises)'음악을 재생하기로 되어 있었음. 따라서 피고는 DJ의 음악 재생 행위를 충분히 관리, 감독할 수 있었고, 무단 재생 행위를 막을 수 있었음. 이에 따라, 현실적으로 DJ가 재생할 음악을 세세하게 관리, 감독할 수 없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논리적이지 못함. 결과적으로 피고는 그의 관리, 감독 의무를 다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도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짐.

평가 및 전망

○ 이번 영국의 판결은 음악 저작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음악 저작물의 정당한 이용 허락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법원의 입장을 보여줌. 이번 판례는, 비록 음악 저작물을 재생하는 직접적 주체는 피고용인이라고 해도 피고용인을 이용하여 영리행위를 하는 고용인에게도 저작권 침해 책임이 있다고 판시함으로서 정당한 저작물 이용을 장려하는 것으로 보임.

※ 참고 자료

https://bit.ly/2KoApRz
https://bit.ly/2jcPgSk
https://bit.ly/2u0Ei3R

독일

법원, 사진작가는 위키미디어에 올린 사진의 상업적 이용을 허락한 경우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박희영 (독일 막스플랑크 국제형법연구소 연구원, 법학박사)

저작자를 표시하고 링크를 설정하는 조건으로 위키미디어에 올린 사진을 이용 허락한 경우, 이러한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이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법원은 권리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함.

사실 관계 및 진행 과정

○ 사진작가인 원고는 자신이 촬영한 사진을 위키미디어 사이트(wikimedia.org)에 올려서 크레이티브 커먼스 라이선스(CCL)<1>에 의해서 무료로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함(CCBY-SA 3.0). 하지만 원고는 이 사진을 이용할 경우 저작자를 표시하고 위키미디어 사이트에 링크하는 것을 조건으로 제시함.

○ 피고는 자신의 웹사이트에서 원고의 사진을 이용하였지만, 원고가 제시한 조건을 준수하지 않았음. 다만, 피고는 저작자를 해당 사진에서 표시하지 않고 법적 책임자 고지 부문(Impressum)에서만 표시함.

○ 원고는 피고에게 여러 번 서신을 통하여 저작권 침해를 경고했으나 반응이 없자 마지막으로 변호사를 통해서 경고함.

○ 원고는 자신이 전문 사진작가이므로 피고가 이용한 사진은 500유로의 이용료를 지불하면 이용할 수 있다고 통지함.

○ 피고가 장래에 동일한 침해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자 당사자들은 원래 주장된 금지청구권은 만장일치로 처리된 것으로 합의함.

<1> Creative Commons License란 자신의 창작물에 대하여 일정한 조건을 명시하여 타인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이다. 저작권법 제46조에 따르면 지적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고, 이용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과 조건의 범위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저작권 기술 용어사전, 2013, 한국저작권위원회).

○ 그런데 원고는 1,000유로의 손해배상금과 650유로의 침해경고비용을 피고에게 요청함.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원고는 소송을 제기함.

○ 지방법원은 100유로의 손해배상금과 일부의 경고 비용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불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고 나머지는 기각함.[<2>] 피고는 이에 대해서 항소를 제기함.

원고 및 피고의 주장

○ 피고는 사진이 위키미디어에서 무료로 제공되었기 때문에 100유로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지방법원의 판결은 파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원고는 항소의 철회를 주장함.

- 원고는 이용 조건을 준수하는 경우 사진을 위키미디어에서 무료로 이용하도록 올려놓았지만, 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2010년부터 여기에 올린 사진은 장당 300유로씩 받고 이용을 허락하였다고 주장함. 특히 원고는 위키미디어에서 CCL에 의해서 사진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는 것은 견본제품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과 같이 유료 제품에 대한 문의를 촉진하기 위한 판매 전략이었다고 주장함.

항소심 법원의 판결

○ 쾰른 고등법원은 2018년 4월 13일 지방법원의 판결과는 달리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결하고[<3>] 5월 24일 판결문을 공표함.

○ 항소심 법원은 기본적으로 저작자를 표시(저작권법 제13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권(저작권법 제97조 2항)은 인정할 수 있지만, 실제로 발생한 경제적 손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함. 원고가 CCL을 통해서 사진을 무료로, 특히 상업적으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기 때문에, 유료 라이선스의 가치는 라이선스 조건(즉 저작자의 표시와 위키미디어 사이트의 링크 의무)을 위반하는 경우에만 존재한다고 봄. 하지만 이러한 조건의 위반에는 경제적 가치가 부여되지 않는다고 판시함.

○ 항소심 법원은 또한 본 사안은 라이선스 유추 적용 원칙에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함. 합리적인 계약당사자가 사정을 인식하고 합의를 할 수 있는 경우에만 라이선스 유추 적용이 가능하지만, 원고가 자신의 사진을 상업적 이용을 위해서도 무료로 이용하게 한 것은 저작권

<2> LG Köln, Urteil vom 24.08.2017 - 14 O 336/15.
<3> OLG Köln, Urteil vom 13.4.2018 – 6 U 131/17.

침해로 손해가 야기되었다고 추정할만한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함. 법원은 오히려 사진이 상업적으로 이용될 수 있었고 무료로 접근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원고가 유료의 저작권 행사를 포기한 것이라고 판단함.

○ 한편, 항소심 법원은 CCL이 권리자의 다른 저작물을 알리기 위한 목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함. 예를 들어 CCL을 통한 광고가치를 기본적으로 고려함. 하지만 본 사안에서 링크를 요청한 것은 원고 자신의 상업적 사이트가 아니라 위키미디어 사이트임을 지적함. 이 사이트에는 원고의 다른 사진은 물론 다른 작가의 사진도 모두 무료로 제공되어 있으므로 원고 자신의 상업적 서비스와 직접 연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링크 설정 의무이든 저작자 표시 의무이든 경제적 가치가 고려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 따라서 CCL을 통한 광고효과나 이로 인한 이용자의 사진 주문은 기대할 수 없다고 함. 설사 라이선스 이용 조건에 따라서 설정된 링크가 원고의 상업적 사이트로 연결되었다 하더라도 이 링크의 광고가치는 원고가 주장한 650유로가 아니라 10유로에 불과하다고 봄.[<4>]

평가 및 전망

○ 사진작가들이 CCL에 의해서 이용 조건을 제시하여 자신의 사진을 위키미디어에 올려두고 이러한 조건을 위반하는 이용자에 대해서 저작권 침해를 경고하여 수입을 올리는 영업모델이 존재하였음. 이번 판결로 이용 조건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게 되는 경제적 손해를 권리자가 증명하지 못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됨.

○ 따라서 앞으로 CCL 침해로 인한 저작권 경고로 수입을 올리는 영업 모델이 이 판결로 위축될 수 있을지 주목됨.

※ 참고 자료

https://bit.ly/2IGTKHU

https://bit.ly/2z0ic7x

<4> 항소심 법원은 링크를 통해서 영향을 받게 되는 권리자 사이트의 경제적 이익과 저작자를 표시하지 않아 발생하는 가치의 이중적 손실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판결에서 제시한 법리를 원용하고 있음(BGH Urteil vom 18.9.2014 - I ZR 76/13, CT-Paradies).

오스트리아

법원, 유튜브는 이용자가 게시한 저작권 침해 콘텐츠에 대하여 면책을 주장할 수 있는 중립적 호스트 제공자가 아니다

박경신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아트로센터 디렉터)

2018년 6월 6일 비엔나 상사법원은 유튜브는 중립적 호스트 제공자가 아니며, 이용자가 저작권 침해 콘텐츠를 게시하는 것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함. 링크, 정렬 및 필터링, 특히 특정 카테고리의 목록 생성, 이용자의 브라이징 습관의 분석 및 맞춤형 콘텐츠 제안을 고려할 때, 법원은 유튜브는 중립적 매개자로써의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고 판시함. 온라인 콘텐츠 공유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EU 저작권지침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오스트리아 뿐 아니라 EU 전체에 시사하는 바가 큼.

사실 관계

○ 2014년 오스트리아 상업 TV 채널인 Puls4는 자사의 프로그램이 유튜브에 게시되자, 2014년 유튜브를 상대로 해당 프로그램의 삭제를 구하는 저작권 침해정지 가처분을 신청함.

○ 이에 대하여 유튜브는 호스트 제공자이므로 EU 전자상거래지침[<1>] 제14조[<2>]에 따라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실제로 인식한 경우가 아닌 이상 이용자가 게시한 콘텐츠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함.

법원의 판단

○ 2018년 6월 5일 비엔나 상사법원은 유튜브는 중립적 호스트 제공자가 아니며 제3자가 저작권 침해 콘텐츠를 게시하는 것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함.

<1> Directive 2000/31/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8 June 2000 on certain legal aspects of information society services, in particular electronic commerce, in the Internal Market

<2> 제14조 제1항: 정보사회서비스 수신자가 제공하는 정보의 저장으로 이루어진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 회원국은 다음 조건 하에서 서비스제공자가 서비스 수신자의 요구에 의하여 저장된 정보에 대해 책임이 없도록 보장해야 한다: (a) 서비스제공자가 불법적 활동·정보에 대한 실제인식이 없고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불법적 활동·정보가 분명한 사실이나 상황을 의식하지 못한 경우; 또는 (b) 서비스제공자가 그러한 인식·의식을 한 시점에 지체없이 해당 정보를 제거하거나 정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한 경우

○ 유튜브의 플랫폼 상에서의 링크, 정렬 및 필터링, 특히 미리 정의된 카테고리에 따른 목록 생성, 이용자의 브라이징 습관의 분석 및 맞춤형 콘텐츠 제안 행위를 감안할 때 유튜브는 단순히 중립적 매개자로서의 역할만을 한 것이 아님.

○ 따라서 유튜브는 향후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저작권 침해 콘텐츠가 게시되지 못하도록 보장해야 함.

평가 및 전망

○ 이번 판결은 정보사회서비스제공자가 자사의 고객들이 제공한 데이터를 단순히 기술적이고 자동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중립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러한 데이터를 인식하거나 이를 통제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면 호스트 제공자로써의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한 유럽 사법재판소의 해석[3]과 동일한 맥락에 있음.

○ 이번 판결에 대해서는 저작권자가 플랫폼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플랫폼 운영자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저작권 침해 책임의 범위를 확장시켜가고 있는 최근 유럽 사법재판소의 판결의 경향[4]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평가가 있음.

○ 이번 판결이 다른 유럽 국가들을 구속하지는 않지만 온라인 콘텐츠 공유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EU 저작권 지침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5] 오스트리아 뿐 아니라 EU 전체에 시사하는 바가 큼.

○ 유튜브가 항소할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가운데 유럽 내 유사한 사건에서와 마찬가지로 합의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6]

<3> Judgment of 12 July 2011, L'Oréal SA and Others v eBay International AG and Others Case, C-324/09, EU:C:2011:474.

<4> 2017년 6월 14일 유럽 사법재판소는 저작권 침해 콘텐츠가 파일 공유 플랫폼의 이용자에 의해 게시되었다 하더라도 플랫폼 운영자가 이에 대한 접근에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경우에는 파일 공유 플랫폼의 제공 및 운영 행위가 EU 저작권지침상 재현 행위로 간주되어야 하며, 플랫폼 운영자에게 저작권 침해 책임이 있다고 판시함. Judgment of 14 June 2017, Stichting Brein Case, C-610/15, EU:C:2017:456 참고.

<5> 온라인 콘텐츠 공유 서비스 제공자는 저작권자가 확인한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이용자가 게시된 콘텐츠에 대하여 면책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한 EU 저작권지침안은 2018년 6월 20일 유럽 의회 법무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으며 2018년 7월에 유럽 의회에 상정될 예정임.

<6> 독일음악저작권집중관리단체인 GEMA가 유튜브상의 음악저작물의 불법적인 공유로 저작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유튜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2016년 1월 뮌헨 고등법원은 유튜브는 음악 포털 서비스 제공자가 아니라 이용자들을 위한 이용 도구의 기술적 제공자인 인터넷 동영상 플랫폼 제공자로 간주되므로 이용자들에 의해 공유되고 있는 음악저작물에 대해 유튜브가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함. 그러나 이 판결 이후 2016년 11월 GEMA와 유튜브는 화해하고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바 있음. OLG München, Urteil v. 28.01.2016 – 29 U 2798/15 참고.

○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유튜브 뿐 아니라 페이스북과 같은 다른 온라인 플랫폼 역시 자사의 사이트상의 콘텐츠를 보다 엄격하게 모니터링해야 하기 때문에 향후 온라인 플랫폼의 운영 방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 참고 자료

https://bit.ly/2KnS2gd
https://bit.ly/2JDzQyx
https://bit.ly/2Kp8ccr

호주

오픈소스 산업계, CPTPP로 인해 소프트웨어 무료 라이선싱 행위가 불법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다

유현우 (단국대학교 IT법학협동과정 지식재산권법 전공 박사과정)

호주 의회의 외교통상부, 상무부 등 소위원회에서는 현재 호주의 TPP-11 내지 CPTPP 협정 비준을 위한 단계로서 동 협정의 내용에 대한 검토 및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협의하는 과정에 있음. 이에 대해 호주 오픈소스 산업협회(Open Source Industry Australia) 등 오픈소스 산업계는 2018년 6월 12일 의회 소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전자상거래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협정 제14.17조가 호주의 무료 및 오픈소스 소프트웨어(free & open source software) 시장을 외국 기업들이 완전히 잠식하도록 만들고 동 조항으로 인해 소프트웨어 무료 라이선싱 행위 자체가 불법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며 정부에게 CPTPP 협정을 비준하지 않을 것을 촉구함.

개요

○ 환태평양 지역에 위치한 12개국의 TPP 협정이 미국의 탈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최근 기존의 11개국(TPP-11)[<1>] 외에 우리나라와 말레이시아 태국 등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이하 'CPTPP')의 가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미 탈퇴한 미국에서도 동 협정의 재가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음.

○ 호주 의회의 외교통상부, 상무부 등 의회 소위원회에서는 현재 호주의 TPP-11 내지 CPTPP 협정 비준을 위한 단계로서 동 협정의 내용에 대한 검토 및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협의하는 과정에 있음.

<1> 지난 2018년 3월 8일 호주를 비롯한 일본,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칠레,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 11개국은 2019년 초에 공식 발효를 목표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서명한 바 있음. 유현우, "[호주] 정부, 공정이용 도입 등 저작권법 현대화 정책과 관련한 자문 보고서 발표", 「저작권 동향」 2018년 제3호, 한국저작권위원회, 2018년.

호주 오픈소스 산업협회(OSIA)의 보고서

○ 호주 오픈소스 산업협회(Open Source Industry Australia, 이하 'OSIA')[2] 등 오픈소스 산업계는 2018년 6월 12일 의회 소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CPTPP 협정 제14.17조[3]의 내용이 다소 부적절하고 예외 범위가 좁게 규정되어 있어 호주의 무료 및 오픈소스 소프트웨어(free & open source software, 이하 'FOSS') 시장을 외국 기업들이 완전히 잠식하게 만들고 동 조항으로 인해 소프트웨어 무료 라이선싱 행위 자체가 불법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음.

- OSIA는 CPTPP 협정 제14.17조의 적용 대상이 대중적으로 이용되는 소프트웨어(mass-market software) 또는 그러한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제품으로 한정되고 중요한 인프라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는 포함되지 않지만, 몇몇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컴퓨터 소프트웨어 소스코드의 전송 또는 접근 요구 자체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호주 국민들의 자유로운 오프소스 소프트웨어 이용과 소프트웨어 무료 라이선싱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음.

○ 특히 OSIA가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은 '상업적으로 협상된 계약(commercially negotiated contracts) 상의 소스 코드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한 조건의 포함 또는 이행'과 관련한 내용으로서 이는 협정 제14.17조의 적용 예외를 규정한 것임.

- OSIA는 호주 정부가 CPTPP를 비준할 경우 무료 및 오픈소스 소프트웨어(FOSS) 라이선스와 관련하여 CPTPP 협정 제14.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업적으로 협상된 계약(commercially negotiated contracts)'이라는 불분명한 용어를 어떻게 해석할지는 전적으로 법원이 결정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임.
- 그러나 이는 만약 호주 법원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상업적으로 협상된 계약(commercially negotiated contracts)'이 아니라고 판단하게 된다면 호주에서는 더 이상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시행할 수 없게 되고 무료 소프트웨어도 금지될 수 있다는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음.
- 이로 인해 호주의 무료 및 오픈소스 소프트웨어(FOSS) 시장은 사실상 외국 기업들에게 잠식당하게 되고 소프트웨어 무료 라이선싱 행위 자체도 불법이 될 우려가 있음.

<2> 호주 오픈소스 산업협회(Open Source Industry Australia)는 호주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산업을 대표하며 동 산업의 발전을 위해 2004년 Arjen Lentz, Con Zymaris, Brendan Scott에 의해 설립된 호주의 단체로서 호주의 비즈니스, 정부 및 교육 부분이 지속 가능한 재정을 확보하고 오픈 소스 및 공개 표준(open standards)의 채택을 통해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또한 호주 정부가 공개 표준(open standards) 및 오픈 소스 산업의 성장과 성공을 도모하고 세계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인 체계를 제공하고 있음. * 출처: <http://osia.com.au.>

<3> CPTPP 협정 제14.17조에서는 소프트웨어 또는 해당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제품의 수입, 유통, 판매 또는 사용을 위한 조건으로 다른 협약국의 국민이 소유한 소프트웨어의 소스 코드의 전송 내지 접근을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OSIA는 호주 국민들의 자유로운 오프소스 소프트웨어 이용과 소프트웨어 무료 라이선싱 행위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에게 CPTPP 협정을 비준하지 않을 것을 촉구하고 있음.

○ 또한 협정 제14.17조상의 규정은 저작권이 침해된 경우에 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자에게 소스코드 이전을 요구하는 라이선스 조항을 준수하도록 강제하기 위한 금지명령(injunction)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 만약 금지명령 청구를 통해 라이선스 조항의 준수를 강제할 수 없게 된다면 오픈소스 라이선스는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어 버릴 것이라는 OSIA의 주장임.

○ OSIA는 이전에도 지속적으로 호주 정부에 의견서 및 보고서를 제출하여 TPP 협정의 지식재산권 관련 조항이 호주 오픈소스 산업의 혁신을 저해하고 호주 국내법 및 다른 국제 조약과 모순되기 때문에, 호주 국내법과 TPP 협정의 부조화 및 정합성 문제가 해결될 때 까지 TPP 협정에 대한 비준을 보류하도록 권고한 바 있으며[<4>], 올해 5월에도 외교 상임위원회(Committee on Foreign Affairs)와 국방·통상 위원회(Committee on Defence & Trade's)에 CPTPP 협정을 파기하고 진정한 자유 무역을 위한 새로운 협상을 시작할 것을 요구[<5>]하는 등 현재 호주 정부가 진행 중인 CPTPP 협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여 왔음.

평가 및 전망

○ 비록 현재는 OSIA가 호주 내의 오픈소스 산업에 대해서만 우려를 나타내고 있지만 나머지 TPP-11 국가들에게도 동일한 논리가 적용될 수 있으며, 협정 제14.17조의 내용은 한국, 말레이시아, 태국과 최근 브렉시트의 대안으로 CPTPP 가입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영국과 같이 추후에 CPTPP 협정에 가입하게 될 다른 국가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TPP협정을 탈퇴했다가 최근 다시 가입을 검토 중인 미국이 만약 CPTPP 협정에 재가입하게 된다면, 전 세계 오픈소스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미국의 위상을 고려해 볼 때 협정 제14.17조로 인해 전 세계 오픈소스 산업계에 큰 파장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됨. 전 세계적으로 오픈소스 생태계가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협정 제14.17조를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

<4> 유현우, "[기타] 호주 산업계, TPP 협정의 저작권 조항과 자국법의 충돌 우려", 해외 저작권 보호 동향 제27권, 한국저작권보호원, 2016년, 103-104면.

<5> http://osia.com.au/f/osia_sub_201805_sscfadt.pdf

※ 참고 자료

https://bit.ly/2MBlsZ2

https://bit.ly/2KGDbxG

https://zd.net/2Nhpdng

https://bit.ly/2MzH9bN

일본

지식재산고등법원, 리트윗에 의한 영상 트리밍은 저작인격권을 침해한다

권용수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박사)

지식재산고등법원은 원고가 Twitter 이용자 A가 자신의 사진 저작물을 무단으로 트윗하고, 그 후 다른 이용자 B가 그 트윗을 리트윗한 것에 대해 저작권 및 저작인격권 침해를 주장한 사건에서 트윗뿐만 아니라 리트윗에 의한 저작인격권 침해를 인정함. 이번 판결은 인라인 링크 방식의 리트윗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금까지의 인식을 뒤집은 것으로서 실무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됨.

사실관계

○ 프로 사진작가인 원고는 2009년 6월 자신이 촬영한 사진(이하 '이 사건 사진')을 자기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게재함.

- 원고는 사진 왼쪽 윗부분에 '전재 엄금'이라는 문구를, 사진 왼쪽과 오른쪽 아랫부분에 자신의 이름과 사인을 기재함.

○ 단문 투고 사이트 Twitter 이용자 A가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사진을 수정·변경하여 트윗하였고, 그 후 다른 이용자 B가 그 트윗을 리트윗함.

- 리트윗한 계정의 타임라인에는 이 사건 사진을 수정·변경한 섬네일 영상이 인라인 링크(in-line link) 형태로 표시되어 있음.

○ 원고는 Twitter 이용자 A, B로 인해 자신의 저작권(복제권, 공중송신권 등) 및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 등)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특정 전기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 제한 및 발신자 정보 공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1>]에 의거해 피고에 대해 이용자 A, B의 발신자 정보(메일 주소 등) 공시를 요구함.

<1> '특정 전기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 제한 및 발신자 정보 공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특정 전기통신에 의한 정보 유통으로 인해 자기의 권리를 침해받은 자가 그 전기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신의 권리를 침해한 발신자의 정보 공시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피고는 Twitter를 운용하고 있는 미국 Twitter 본사 및 일본 자회사 'Twitter 재팬 주식회사'임.<2>

인라인 링크

○ 인라인 링크(in-line link)는 연결된 사이트를 클릭 등으로 찾아가지 않고 현재 사이트에서 링크를 여는 것만으로 그 사이트의 정보를 확인·재생할 수 있는 방식의 링크를 말함.

○ 인라인 링크는 연결된 사이트의 콘텐츠 데이터가 이용자의 컴퓨터에 직접 송신되고, 링크가 표시된 사이트 서버에의 송신이나 축적은 이루어지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에 '인라인 링크의 설정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 인식이었음.

○ 기본적으로 리트윗은 인라인 링크의 하나임.

- 또한 사진이 포함된 트윗을 리트윗하더라도 그 사진의 데이터 자체는 변하지 않음.

사건의 주요 쟁점

○ 이 사건의 쟁점은 Twitter 이용자 A가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사진을 수정·변경하여 트윗한 것이 저작권 및 저작인격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또한 그러한 트윗을 리트윗하는 것도 저작권 및 저작인격권 침해에 해당하는지임.

○ 이 사건에서는 Twitter 이용자 A가 이 사건 사진을 트윗하는 단계에서 그 표시 영상이 변경되었고, 이용자 B의 타임라인에는 그와 동일한 영상이 표시된 것을 이유로 이 사건 사진의 표시 영상을 변경한 주체가 누구인지, 리트윗한 이용자 B를 침해 행위자라 할 수 있는가도 다투어졌음.

판결

○ 1심 법원은 Twitter 이용자 A가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사진을 수정·변경하여 트윗한 것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메일주소 공시를 인정함.

○ 다만 이용자 B의 리트윗에 대해서는 저작권 및 저작인격권의 침해를 부정하고 메일주소 등의 공시를 인정하지 않음.

<2> 지식재산고등법원은 일본 자회사 'Twitter 재팬 주식회사'는 Twitter를 운용하는 자도 아니고 발신자 정보를 공시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함.

○ 지식재산고등법원은 1심 법원과 마찬가지로 이용자 B의 리트윗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부정하고, 저작권 침해의 보조로도 보지 않음.

○ 그러나 1심 법원과 달리 저작인격권의 침해를 인정하고 이용자 B의 메일주소 공시를 인정함.

- 지식재산고등법원은 결국 리트윗이라는 행위의 결과로서 송신된 HTML 프로그램 등으로 인해 표시되는 영상의 위치나 크기가 지정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리트윗한 이용자 B도 저작인격권 침해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함.

평가 및 영향

○ 이번 판결은 인라인 링크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금까지의 인식을 뒤집은 것으로서 실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 우선 Twitter로서는 이용자에 의한 저작인격권(특히 동일성 유지권) 침해를 방지한다는 관점에서 되도록 원저작물을 그대로 표시하도록 하는 시스템 변경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Twitter 이용자 입장에서는 리트윗이 저작인격권 침해가 될 가능성이 생겼고, 무엇보다 권리자 측에 메일주소가 공개되고 경고문이나 금지 청구(리트윗 삭제 등)를 받을 위험이 생겼음.

- Twitter 이용자가 법적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려면 리트윗 전에 대상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점검하고 저작권 침해가 의심스러운 경우 리트윗을 하지 않아야 할 것임.

○ 지식재산고등법원이 리트윗에서 저작자의 성명이 삭제되어 있는 것을 이유로 성명표시권 침해를 인정한 점을 생각하면, 저작자는 자신의 성명을 표시함으로써 자신의 작품이 무단으로 수정·변경되는 것을 방지할 수도 있을 것임.

○ 타인의 콘텐츠를 자신의 웹사이트에 표시하는 것은 리트윗 외의 방법으로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타인의 콘텐츠를 인라인 링크 방식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콘텐츠를 수정·변경하지 않고 되도록 원래 데이터 그대로 표시할 필요가 있음.

※ 참고 자료

www.ip.courts.go.jp/app/files/hanrei_jp/761/087761_point.pdf
http://www.ip.courts.go.jp/app/files/hanrei_jp/761/087761_hanrei.pdf
http://www.itmedia.co.jp/news/articles/1806/13/news109.html
http://www.itmedia.co.jp/news/articles/1806/22/news016.html
www.courts.go.jp/app/files/hanrei_jp/185/086185_hanrei.pdf

일본

2018 지식재산추진계획 결정

권용수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박사)

지식재산전략본부는 ① 앞으로의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인재·사업 육성, ② 도전·창조 활동 촉진, ③ 새로운 분야의 체제 디자인을 주요 골자로 하는 '2018 지식재산추진계획'을 결정·공개함.

새로운 지식재산전략비전 결정

○ 지식재산전략본부는 2013년 6월 '지식재산정책비전'을 결정하고, 이를 반영한 지식재산추진계획을 매년 책정함으로써 지식재산전략을 추진하여 왔음.

○ 그 결과 ① 데이터 서비스 표준화 등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글로벌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②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 관리 강화 지원, ③ 전자책에 대응한 출판권 정비나 유연한 권리제한규정 정비에 관한 저작권법 개정 등 디지털 네트워크 사회에 대응한 환경 정비, ④ 해적판 사이트에 관한 긴급대책 등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소프트파워 강화에 관한 성과를 거두었음.

○ 일본의 지식재산전략은 '지식재산정책비전'을 토대로 착실히 강화되어 왔지만, 비전이 책정된 2013년 당시의 예상을 넘어 IoT·빅데이터·인공지능·블록체인과 같은 기술 발전, 사람의 가치관 변화, 국제정세 변화 등 사회의 모든 상황이 변화하였음.

○ 이에 지식재산전략본부는 2018년 6월 지식재산의 독점·교환·보호가 아닌 '공유'에 의한 활용 확대, 중장기 비전을 정부 전체가 공유하고 장래 사회에 필요한 시스템 설계를 목표로 2025~2030년을 내다본 새로운 '지식재산전략비전'을 검토·결정함.

- '지식재산전략비전'은 경제적 가치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가치를 포섭함으로써 다양한 개성이 맘껏 발휘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가치 디자인 사회」를 목표로 함.

○ 지식재산전략본부가 2018년 6월 12일 결정한 '2018 지식재산추진계획'은 기본적으로 2013년의 '지식재산정책비전'에 기초한 것이지만, 새로운 '지식재산전략비전'에의 연결을 염두에 둔 것이라 할 수 있음.

2018 지식재산추진계획

○ 2018 지식재산추진계획(이하 '계획')의 중점사항은 ① 앞으로의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인재·사업 육성, ② 도전·창조 활동 촉진, ③ 새로운 분야의 체제 디자인임.

○ ① 수요자의 다양한 가치관이 시장을 견인하는 시대에는 이노베이션 창출 과정이나 가치 창출 방식이 변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인재육성이 중요함.

- 외국인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일본의 콘텐츠를 상품화·서비스화 할 수 있는 인재 육성이나 일본 콘텐츠를 해외에 홍보·확산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외국인 인재 육성도 중요함.

○ ② 콘텐츠 분야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그 제작·유통방법을 포함한 생태계가 급변할 가능성이 있음. 이 때문에 콘텐츠의 지속적 발전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창작자나 그들을 지원하는 기업의 새로운 도전을 촉진하는 시스템 정비가 중요함.

- 예컨대, 크라우드 펀딩 등 새로운 자금조달 방법을 활용한 콘텐츠 기획 제작이나 해외 프로모션 조직, 해적판 대책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해 지원 등이 필요함.
- 또한 콘텐츠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블록체인 등의 기술을 활용한 저작물 관리·이익분배 시스템 구축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도전을 촉진하는 전제 요건으로서는 도전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하는 예컨대, 디지털 시대의 기술이나 유통 방법의 다양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해적판 대책을 국제적인 연계와 협조 하에 실시하는 것이 필요함.

- 정품 유통을 포함한 모방품·해적판 대책을 검토하는 회의를 설치하고, 사이트 블로킹에 관한 법제도 정비나 모방품·해적판 대책에 관한 논점 검토를 포함한 향후 대책이나 그 방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함.
- 계획에서는 리치 사이트에 대한 대응을 권리 보호와 표현의 자유의 균형이라는 관점에서 검토하고, 빠른 법안 제출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청함.
- 또한 지식재산에 관한 교육을 충실화한다는 관점에서 해적판 대책을 포함한 저작권 교육에 이바지할 수 있는 교재의 개발·보급을 요청함.

○ ③ 산업과 문화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인재나 사업을 육성하고 새로운 창조와 도전을 촉진하는 것 외에, 그러한 활동을 제도로서 지원함과 함께 가치 창조의 새로운 원천을 모색해 나가야 함.

- '데이터 이용권한에 관한 계약 가이드라인'을 전면 개정하여 데이터에 관한 계약을 구체화하는 한편 인공지능(AI) 개발·이용을 둘러싼 계약의 사고방식을 정리함.

- 기술이나 서비스 동향, 해외의 지식재산 제도 동향을 검토하고 그것을 토대로 법 정비의 필요성을 검토함. 특히 학습용 데이터, AI 프로그램, 학습 후 모델, AI 생성물에 관한 제도 정비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함.

○ 특히 저작권의 영역에서는 디지털화·네트워크화에 대응한 저작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 저작권법의 적절한 운용이라는 관점에서 가이드라인을 책정하고 저작권에 관한 보급·계몽 활동을 하는 한편 라이센싱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
- 저작권자 불명 등의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재정제도의 이용을 원활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 이때 권리자단체와 협력하여 실시한 실증사업의 결과를 참고함.
- 저작물 이용 원활화라는 관점에서 확대집중허락제도에 관한 지금까지의 조사연구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 과제를 검토함.
- ICT 활용 교육에서 저작물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함.
-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은 권리처리절차를 원활화하고 콘텐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콘텐츠 권리 정보를 집약화한 데이터베이스의 이용을 촉진하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음.
- 위의 사항 외에, 계획에서는 창작자에게 적절한 대가가 환원되고 그것이 콘텐츠 재생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적녹음녹화보상금제도를 재검토하고, 이를 대신하는 새로운 제도 도입을 논의할 것도 요청함.

※ 참고 자료

http://www.kantei.go.jp/jp/singi/titeki2/kettei/chizaikeikaku2018.pdf
http://www.kantei.go.jp/jp/singi/titeki2/kettei/chizai2018_point.pdf